

□ 추진배경

- 교육시설 전반에 대한 위해 요인을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지속되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제 도입
 - ※ 기존 학교의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25.12월까지 인증을 받도록 추진
- 인증 대상 교육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1차 교육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증 추진 중
-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위원 모집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사전에 인력을 확보
- 이에, 향후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위원 모집 시 지역거점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해당 권역 교육시설안전인증 심사를 담당하여, 원활한 인증진행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 ※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통해 심사단 구성

□ 자격요건

-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5조 제4항
 1.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5.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한 후 10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분야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별표 2. 전문분야

[별표 2]

전문분야(제5조 관련)

인증기준분야	세부 전문분야
시설안전	건축구조, 토목구조, 건축환경 또는 건축설비, 건축계획, 건축시공, 소방안전, 가스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건축공학, 안전공학
실내환경안전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재료, 건축공학, 소방안전, 안전공학
외부환경안전	건축계획, 도시계획, 건축공학, 교통공학, 소방안전, 안전공학

※ 인증심사단 구성원칙

- 1) 안전인증 분야별 다른 전문분야를 가진 최소 3인 이상을 구성
- 2) 사용자는 시설안전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안전인증 분야의 심사단으로 구성

※ 건축사는 건축계획에 해당됨

□ 모집안내

○ 추천자격

1. 나이 : 50세~67세 이하(교육시설 전수조사로, 현장조사에 신체적 불편함이 없는 사람)
2. 관련 기술사 소지(기계, 설비, 전기, 소방, 안전)
3. 관련 기술사 미소지라 할지라도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적합한 사람(기계, 설비, 전기, 소방, 안전)
4. 휴대용 모바일기기 또는 전자기기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
 - 심사업무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

○ 모집계획

1. 지역
 - 수도권(서울,경기) 각 0명 추천
 - 인천 각 0명 추천
 - 충청권 각 0명 추천
2. 위촉계획
 - 각 지역별 약 2~5인 위촉 예정

○ 수행업무

1. 교육시설안전 인증 서류심사
2. 교육시설안전 인증 현장심사
3. 현장심사 후 결과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검증(연구원) 후 최종 완료처리
4. 현장심사는 주 1~2회 예정(업무여건 및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조건

1. 상근 심사위원(정규직대우, 별도협의)
2. 비상근 심사위원(위촉직)
3. 약 44만원/건(세전), 최대 1일 2건 가능(대학시설, 기타시설은 비용이 다름)
 - 최종 완료처리 되어야 심사비 지급
 - 매년 엔지니어링 단가기준으로 소폭 상승
 - 최종 선정된 분에 한하여 향후 상세 안내
4. 비상근 심사위원 위촉기간 3년(연장가능)

○ 제출서류

1. 이력서(사진첨부)
2. 최종학력 증빙서류
3. 자격증 사본
4.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분은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증명가능한 서류
5. 해당 서류를 edukriea@kriea.re.kr 로 송부
6. 최종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의 제출서류는 30일 이내 폐기

□ 향후 계획

- 연구원 내부 검토 후 최종 선정
- 최종 선정된 분에 한하여 향후 교육시설안전 인증 심사위원 모집 시 우선 안내
 - 선정된 분은 전문기관 협의회의 교육(1주일 원격교육)을 거쳐 위촉됨
 - 연구원에서 현장 1회 실습과정이 있음

□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이메일을 통하여 접수 edukriea@kriea.re.kr